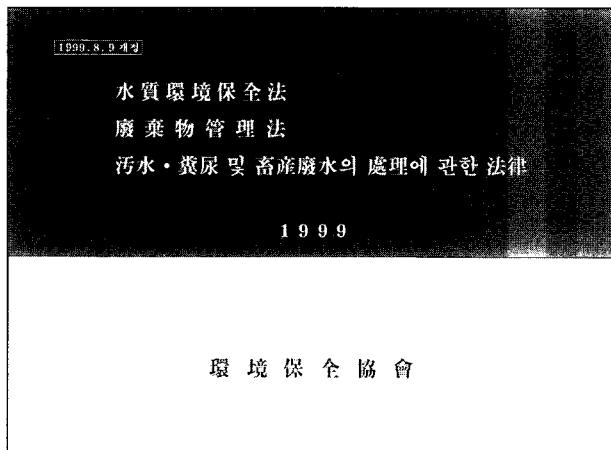


개정령 공포(公布)에 따른 '99. 8월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



8월 9일자로 수질, 폐기물,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 등의 시행규칙 중 개정령이 공포(公布)되었다.

이에 본협회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, 폐기물관리법,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집을 만들어 '99 제·개정 환경법령해설 세미나를 9월 3일 개최했다. 환경부 담당관의 직접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업체의 환경담당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이 이루어졌다.

각 법의 주요 개정이유 및 방향을 보면 수질환경보전법은 과도한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환경관리의 신고 및 변경명령제도, 측정기 부착 및 정밀검사제도, 자가측정 의무제도, 단전·단수제도, 환경산업의 진입제도 요소 등을 완화·폐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고,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측정에 따른 토지수용제도 및 다른 법률과 중복되는 토양관련 제도의 폐지, 측정대행업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관시키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.

폐기물관리법 개정의 방향을 보면 발생에서 최종처리에 이르는 처리경로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처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. 또한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온 소형소각시설로 인한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소형소각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,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여 경제활성화와 폐기물 최소화 및 안전관리가 동시에 총족되도록 하였다.

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과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, 오수처리시설·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.

여기서는 핵심이 되는 28개 사항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.

<편집부>

1. 쟁정연료 사용지역이 확대됩니다

도시지역의 아황산가스와 먼지오염도가 저감되어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

□ 실시 시기 : '99. 9. 1.부터

□ 대상지역 및 시설

대상지역	대상시설
○ 김해, 구미, 포항, 전주, 군산, 익산시 (6개시)	○ 업무용 보일러 (수증기증발량 0.5톤이상) ○ 공동주택의 보일러 (평균 전용면적 18평이상 25평미만)
○ 울산, 광주, 대전, 평 택, 오산, 용인, 양산, 마산, 창원, 광양, 여 수, 청주시 (6개시)	○ 업무용 보일러 (수증기증발량 0.2톤이상 0.5톤미만) ○ 공동주택의 보일러 (평균 전용면적 18평이상 25평미만)

□ 관련법규 :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,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(환경부고시 제99-100호)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정책과(500-4279~81)로 문의하십시오.

2.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에 따른 부합여부확인제도가 폐지됩니다

사업자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폐지되는 내용

○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시 허가·변경허가 또는 신고·변경신고한 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토록 하던 부합여부확인제도(위탁기관, 수수료 규정 포함) 폐지

□ 관련법규 :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제2항, 제3항, 제5항,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제2항, 제3항, 제5항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(504-9248), 산업폐수과(504-9253)로 문의하십시오.

3. 생활악취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

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수단이 강화되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합니다

□ 실시 시기 : '99. 10. 16.부터

□ 강화되는 내용

○ 생활악취규제대상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악취제거 조치를 하여야 하며,

○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치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,

○ 아울러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□ 관련법규 :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57조, 제59조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(500-4282~3)로 문의하십시오.

4. 대기환경규제지역내 주유소 저장시설 의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

기존 2,000여 개 주유소에 대한 신고시기가 조정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10. 16.부터

□ 연장되는 시설

○ 대기환경규제지역내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중 방지시설 설치가 2004년 말까지 유예되어 있는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해 신고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

□ 관련법규 :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시행규칙 부칙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(504-9248)로 문의하십시오.

5. 운행자동차 검사대행자가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됩니다

소형정비업체(카센터 등) 및 주유소 등에서 손쉽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진입규제가 완화됩니다

□ 실시 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완화되는 내용

○ 기존에 운행차 검사대행업을 받기 위해서는 시·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했으나,

○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등록신청을 하면 검사대행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

□ 관련법규 : 소음 · 진동규제법 제48조(검사대행자의 등록)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공해과(500-4284~5)로 문의하십시오.

6. 팔당호 인접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됩니다

팔당호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변구역을 지정, 오염원의 신규 입지를 제한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신설된 내용 :

○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하천 · 호소의 경계로부터 1km이내 구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폐수배출 시설, 축산폐수시설, 음식 · 숙박 · 목욕장 등의 신규입지 금지

○ 특별대책지역 밖의 경우 하천 ·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 구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폐수배출시설 등의 신규입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아래의 경우에는 허용

-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하거나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
- 음식 · 숙박 · 목욕장 등으로서 발생오수를 BOD 10mg/l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

□ 관련법규 :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정책과(504-9252)로 문의하십시오.

7.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 하천구간에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가 안이 준용됩니다

수도권 최대 상수원인 잠실수중보 상류구간의 수질이 개선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신설된 내용 :

○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 하천구간에 대해 수도법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을 준용

- 수질오염물질, 농약 등 오염물질의 투기행위

- 가축방목, 수영 · 목욕 · 세탁, 뱃놀이, 행락 · 야영 · 아외취사, 어 · 패류의 포획 또는 양식, 자동차의 세차행위 금지

- 건축물의 건축, 작목의 재배 · 벌채,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제한

□ 관련법규 :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6조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정책과(504-9252)로 문의하십시오.

8.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토지매수제도가 도입됩니다

규제지역내 토지를 매수,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신설된 내용 :

○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안의 토지를 매도자가 원할 때 한강수계관리위원회(한강수계시 · 도지사, 환경부장관 등으로 구성)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매수하고, 하천 · 호소 인접지역의 녹지조성 등에 활용

□ 관련법규 :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7조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정책과(504-9252)로 문의하십시오.

9. 한강수계 규제지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

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신설된 내용 :

○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 한강수계 규제지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

○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사용지역 주민에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지원규모가 확대

□ 관련법규 :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11조

*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정책과(504-9252)로 문의하십시오.

10.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됩니다

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신설된 내용

○ 한강수계에서 취수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·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(한강수계 시·도지사, 환경부장관 등으로 구성)에 납입, 기금을 조성하여 규제지역내 주민지원과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상수원지역 토지 매수 등의 사업에 사용

□ 관련법규 :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19조

*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정책과(504-9252)로 문의하십시오.

11.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에 부 확인기기의 부착의무가 완화되고, 정도검사의무가 폐지됩니다

규제가 완화되어 기업의 부담이 경감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완화되는 내용

○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외에는 부착의무가 제외되고,

○ 부착기기의 정도검사 의무가 폐지되어 기기 구입 비용 및 정도검사 관리에 따른 비용 경감

□ 관련법규 :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 3항내지 5항

*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수과(504-9253)로 문의하십시오.

12. 자가측정이 의무규정에서 권장사항으 로 변경됩니다

자가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자율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완화되는 내용

○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,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해야 하는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가측정의무규정이 권장사항으로 완화

□ 관련법규 :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

*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수과(504-9253)로 문의하십시오.

13. 폐수처리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수수료 규정은 폐지됩니다

폐수처리업 진입이 쉬워지며 자율경쟁이 보장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완화되는 내용

○ 폐수처리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삭제되고,

○ 등록취소 요건이 등록후 2년이내에 영업 미개시 또는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로 완화되며,

○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수탁처리시 수수료 규정은 폐지

□ 관련법규 :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

*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수과(504-9253)로 문의하십시오.

14.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체계가 일원화됩니다

법령 운영상의 혼란을 없앴습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일원화되는 내용

○ 건물의 규모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던 것을 오수처리시설로 일원화하여 법령운용상의 혼란을 없애고, 설치·관리기준도 일원화

종 전	개 정
○ 건축연면적 1,600㎡ 이상 → 오수정화시설	
○ 건축연면적 1,600㎡ 미만 → 합병정화조	오수처리시설

□ 관련법규 :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

정보

법률 제9조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오수과(504-4296)로 문의하십시오.

15.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부설시설이 방지됩니다

건축주나 입주자의 권익이 보호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강화되는 내용

○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설계·시공업자 또는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로 제한하고,

○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결과 설치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동 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시설의 개선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성능이 보장되는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, 선량한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권익 보호

□ 관련법규 :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13조, 제14조의2제1항, 제27조 및 제28조제5항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오수과(504-4296)로 문의하십시오.

16.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자를 전문관리업자로 제한하고, 관리책임을 부과합니다

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유지·관리가 전문화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강화되는 내용

○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전문관리업자인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

○ 위탁받은 시설이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관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일반주민의 시설운영에 대한 부담 해소

□ 관련법규 :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14조제2항, 제28조제3항, 제35조제2항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오수과(504-4296)로 문의하십시오.

17. 상수원보호를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

상수원수질보전이 강화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강화되는 내용

○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더불어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의 증가 억제

□ 관련법규 :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4조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오수과(504-4296)로 문의하십시오.

18. 째래식 변소개조가 권고조항으로 완화됩니다

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□ 완화되는 내용

○ 현행 하수도법상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안에서는 재래식변소를 반드시 수세식변소로 개조하도록 하였으나,

○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도록 강제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의무조항을 권고조항으로 완화

□ 관련법규 : 하수도법 제9조의2

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수도과(504-2455)로 문의하십시오.

19. 배수설비에 준공검사제도가 신설됩니다

배수설비의 철저한 시공관리로 하수처리 효율향상 및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합니다

□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신설된 내용

- 현재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배수설비를 신고·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미설치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
- 따라서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여
 - 규정에 적합한 기자재의 사용을 유도
 -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, 특히 분류식 관거지역의 경우 오수관거와 우수관거의 잘못된 연결을 미연에 방지
- 관련법규 : 하수도법 제24조제3항
- 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수도과(504-2455)로 문의하십시오.

20. 방류수 수질기준이하의 폐수에 대해 공공하수도 유입제외가 적용됩니다

폐수배출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듭니다

-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- 허용되는 내용
- 지금까지 하수처리구역내에 소재하는 모든 폐수 배출업체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라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하수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했으나,
-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되는 농도가 낮은 폐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당해 폐수배출자에 대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및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
- 관련법규 : 하수도법 제24조의2
- 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수도과(504-2455)로 문의하십시오.

21. 배수설비 미설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

배수설비 설치가 강화됩니다

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신설된 내용

- 적정한 하수처리를 위해 배수설비 미설치자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행수단 확보
- 관련법규 : 하수도법 제42조제1항2의2
- 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수도과(504-2455)로 문의하십시오.

22. 과대포장상품에 대한 검사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

생활폐기물의 36.8%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입니다

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신설된 내용

- 과대포장으로 인정되는 제품의 제조·수입자에게 전문검사기관의 과대포장여부검사(포장공간비율·포장재질 등)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 도입
- 명령을 받은 제조·수입자는 검사를 받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, 검사를 받아 오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아울러 제출된 검사결과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·이행토록 명령하고,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관련법규 :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
- 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기물정책과(504-9259)로 문의하십시오.

23. 방지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보증제도가 도입됩니다

쾌적한 주변환경이 조성됩니다

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신설된 내용

- 폐기물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할 수 없도록 사전에 그 처리를 이행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처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부과
- 폐기물처리공체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 납입

-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
 - 처리이행보증금 사전 예치
- 관련법규 :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6
- 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(504-9261)로 문의하십시오.

24.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

소각시설의 94%인 소형소각로가 적정하게 관리됩니다

-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- 신설된 내용
 - 처리능력이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형소각 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,
 - 그 미만인 시설은 설치를 금지(다만,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설치신고일로부터 5년 간 사용 가능)
- 관련법규 :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
- 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(504-9261), 생활폐기물과(504-9260)로 문의하십시오.

25. 폐기물처리시설 설계 · 시공업의 등록제가 폐지됩니다

자유경쟁으로 기술개발이 촉진됩니다

-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- 폐지되는 내용
 - 소각시설 · 매립시설 등을 설계 ·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 · 장비 ·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
- 관련법규 : 종전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내지 제35조 폐지
- 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(504-9261), 생활폐기물과(504-9260)로 문의하십시오.

26. 재생처리업이 중간처리업에 통합됩니다

폐기물의 부적정한 재활용이 방지됩니다

-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
- 통합되는 내용
 - 재생처리업을 중간처리업으로 통합하고, 종전의 재생처리 신고를 재활용신고로 개편
- 관련법규 :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제44조의2
- 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(504-9262)로 문의하십시오.

27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· 운영자의 기술 관리인 신고제가 폐지됩니다

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됩니다

-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- 폐지되는 내용
 -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의 유지 ·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유지 · 관리 전문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던 것은 폐지
- 관련법규 : 폐기물관리법 제39조
- 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(504-9261), 생활폐기물과(504-9260)로 문의하십시오.

28. 공동주택의 불박이장 설치를 권장합니다

연간 약 90만점의 폐가구 발생이 감소됩니다

- 실시시기 : '99. 8. 9.부터
- 신설된 내용
 -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설치를 권장하여,
 - 잣은 이사 등으로 인한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므로써 환경보전과 원목수입 감소효과를 기대
- 관련법규 :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2
- ※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(504-9262)로 문의하십시오.